비밀유지계약서

XXXX(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XXXX(이라 "기업"이라 한다)는 ----(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비밀 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또한, 이러한 계약체결이 당사자 간에 추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포함한다.
- ②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대외비, confidential 등)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mark>-</mark>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본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전항을 준용하여 고지한 때로부터 —일 이내에 유형적인 기록형태로 비밀정보제공에 관한 요약본을 제공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 및 본조 제4항 및 본 계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도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유 지준수의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교육의 실시 및 문서에 의한 비밀준수의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보수령자가 위 제3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3조(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입증책임은 정보수령자에게 있다.
 -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무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4조(시험자재와 샘플)

- ①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시험도구, 샘플, 분석 데이터, 자료, 시제품, 도면, 설계도 등 (이하 종합하여 "시험 자재")은 정보제공자의 소유이며,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시험 자재"를 활용하여 시험과 실험을 할 수 있다.
-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시험 자재"를 제3자가 시험하거나 분석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시험과 행위의 결과는 정보제공자의 소유이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밀정보가 된다.

제5조(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 간의 만료,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년 간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6조(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 제8조(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 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9조(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계약 당사자 외 본 계약 또는 사업의 양수인, 승계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제10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비밀정보를 개량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양 당사자 공동 소유로 하고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귀속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전에 비밀정보를 개량하여 완성된 발명 등을 비밀유지기간 만료 후에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제11조(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정보수령자는 i)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i) "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iii)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확인서가 전술한 기간 이내에 정보제공자에게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그 확인을 위하는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체결 당시에 비하여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 제14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대학" ----

<mark>(주소)</mark>

(단장) (성명) (인)

"기업" ----

<u>(</u>주소)

<mark>(대표직함) (성명)</mark> (인)

(이하 여백)